

(주)GS ESG 위원회 규정

2021.3.12 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정관 및 이사회규정에서 정한 ESG 위원회(이하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역할) 위원회는 이사회에서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심의, 결의함으로써 회사의 ESG에 관한 방향을 수립하고, 관련된 사항을 결정한다.

제3조(구성) 위원회는 사외이사 2인 이상을 포함하여 3인 이내의 이사로 구성한다.

제4조(위원장) ① 위원회는 위원회 결의로 위원 중 1인을 위원장으로 선임한다.

② 위원장이 부재중이거나 유고 시에는 위원회에서 정한 순위에 따른 위원이 이를 대행한다. 다만, 위원회에서 별도로 순위를 정하지 아니한 경우 이사회에서 정한 순서에 따른 위원회 소속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소집) ①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위원회를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다만, 위원회 구성 후 최초로 소집되는 위원회는 이사회 의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를 소집할 때에는 위원장이 일시, 장소 및 목적사항을 회일 7일전에 각 위원에게 통지한다. 그러나 긴급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으며, 위원 전원의 동의가 있는 때에는 소집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제6조(결의사항 등) ① 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 결의한다.

1. ESG 방향 설정
 2. ESG 관련 규범/정책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
 3. 기타 ESG와 관련 있는 사항으로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 ② 회사는 다음의 사항을 보고한다.
1. 기업지배구조 및 지속가능성 보고서 등

2. ESG 대외평가 대응 결과

3. 그룹 친환경협약체 등 ESG 이행 현황

4. 기타 회사에서 필요하다고 판단한 ESG 관련 사항

③ 위원회는 위원회에서 심의, 결의된 사항을 이사회에 부의 또는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결의 방법) ① 위원회의 결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② 위원회의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이 경우 당해 위원은 재적 위원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 위원회는 위원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위원이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통신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위원은 위원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

제8조(관계인 출석)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경영진 및 관계직원에게 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할 것을 요구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외부인사를 위원회에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9조(의사록) 위원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안건, 경과요령, 그 결과,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이유를 기재한 의사록을 작성하고 출석한 위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1. 3. 12부터 시행한다.